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226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2266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1144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배종희

변론종결 2024. 4. 19.

판결선고 2024. 5. 2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1144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10. 10.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21,547,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원상회복으로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의 통지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 및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제3채무자들에게 청구취지 가항 기재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과 화해권고결정의 양수금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23. 8. 29.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이 법원 Q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3면 아래에서 2행부터 4면 1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2023. 5. 10.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법원 R로 상고하였으나 2023. 8. 31. 상고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양수금 추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청구 소송의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21. 10. 26. I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S 사건에서 배당받아 수령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권자로서 2023. 12. 15. 위 법원에 배당금 교부를 신청하여 332,494,90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8호증, 을 제15,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4면 11행부터 5면 6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피보전채권인 공정증서(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7년제232)가 작성된 대여금 채권과 화해권고결정(전주지방법원 H)이 확정된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가 367,706,556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양수금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321,547,291원(= I에 대한 원금 299,766,469원 + J에 대한 원금 21,780,822원) 이상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321,547,291원의 지급을 일부 청구로서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화해권고결정의 양수금 채권은 공정증서의 대여금 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은 C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N의 배임행위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보전채권은 인정될 수 없고, 설령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된 돈에 해당하는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함께 권리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일 뿐이지(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는 달리 소송요건이 아니어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를 각하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8면 10행의 “보이므로,”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보이며, ㉔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법무법인인 피고는 2017년경부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C의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고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극재산의 감소를 위한 기존 소송에 대응하고, 추가적인 분쟁에도 대비해야 했던 C로서는 재산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법률사무를 담당한 피고와의 위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 8면 15행의 “필요하였으므로”부터 19행의 “처리한 사실,”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필요하였으며, 실제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의 압류와 가압류에 허위중복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소송이1)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여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㉔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1 내지 13,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C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변경된 2020. 7. 14. 무렵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약정금,2) 수원지방법원 T 청구이의3) 사건과 같은 기존 소송을 수행하고, 2020. 5. 29.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U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과 같은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C의 소송 업무를 처리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원상회복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상회복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장지용, 판사 류희상

별지

- 1) 예를 들어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의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받은 가압류결정과 공정증서에 기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모두 동일한 채권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제1의 나 3)항 기재 배당이의 소송
- 2) 신탁 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50억 원의 지급을 구한 본안소송으로 2020. 7. 9. 변론이 종결되었다(갑 제7호증의 1, 2 참조).
- 3)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공정증서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으로 2020. 6. 10.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피고가 해임된 후인 2020. 7. 17. 소가 취하되었다(을 제19호증의 1, 2참조).